

**【제3주제】**

## **전통지식자원의 보존과 지재권 활용**

**안 윤 수**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제3주제】

# 전통지식 자원의 보존과 지재권 활용

안 윤 수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업연구관

## 1. 머리말

1995년 WTO 출범은 GATT 체제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함하고 회원국들의 무역 관련 법·제도·관행 등에서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의 조성은 세계 자원보유국들로 하여금 자국의 자원을 보호하고 자원 활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균등한 배분을 요구하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1992년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토착 및 지역사회의 지식, 혁신적 기술 및 관습을 존중하고 이를 보전할 것을 장려함으로써 전통지식을 새로운 경제적 자원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통지식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국제논의 핵심은 경제적 자원으로써 국제지식재산권 문제로 옮겨졌다. 이 문제에 대한 CBD의 위임을 받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기존의 지재권 대상물과 그 특성상 큰 차이가 있는 전통지식, 유전자원, 민속표현물에 대한 지재권 논의를 시작하였다. 논의의 쟁점은 기존 국제지재권 제도에서의 보호와 전통지식의 특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제지재권 제도의 제정으로 대별된다. 기존 지재권 제도 논의는 국제특허분류법 개정과 새로운 선행기술 목록 설정 등 전통지식 품목들의 지재권 출원과 등록에 필요한 요건과 양식들에 관한 논의이며, 새로운 지재권 제도 논의는 국제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해 운영되는 현재의 국제지재권과 완전히 별개의 제도를 만드는 것과 국제차원의 개별국 국내법에 의한 지재권 제도로 대별할 수 있다. 이들 보호제도의 논의는 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EU를 포함한 개도국들 간의 쟁점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지식 자원은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빈약하고 바이오산업 등 산업화 기술은 개도국보다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현 국제지재권 제도를 주장하는 선진국 입장을 온건히 유지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촌소득 감소에 직면하게 된 농민과 지방자치 단체, 농민단체 등 지역사회는 농촌지역에 풍부하게 잠재되어 있는 전통지식자원을 경제

적 향토자원으로 활용코자하는 인식이 점증하고 있다. 중앙정부도 「삶의질 향상 및 지역개발특별법」 제정 등으로 향토자원 활용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자원경제의 세계화에 추세와 더불어 전통지식의 국제지재권 제도는 WIPO 논의를 중심으로 점차 정비되어 국제규범화 될 것이다. 우리 전통지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활용에 의한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제차원의 보호, 이익공유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자원조사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WIPO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통지식 보호제도와 선행기술 양식 등을 모니터링한 내용과 우리나라 전통지식 보호제도에 관해 소개하고 개선책을 논하고자 한다.

## 2. 전통지식의 개념과 범주

### 가. 개념 정의의 필요성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협약 체결 이래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에 대한 개념 정립의 필요성 대두하고 있다. 전통지식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필연적으로 보호의 대상과 범위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통지식의 개념은 시간적 연속성과 지역적 공간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대상의 범위를 설정하기에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통지식의 개념 정의는 범위의 모호성을 극복하며 관련연구 수행의 기초 토대를 확고히 다져질 수 있다.

### 나. 전통지식의 특성

전통지식에서 전통의 의미(WIPO/GRTKF/IC/3/7)는 지식이 만들어진 시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만들어진 방법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전통지식의 생성적 특성(WIPO/GRTKF/IC/3/7)은 특정한 지역, 문화, 사회에 연관되어 문화적으로 도출되고 개발되어온 지식이며, 지역사회가 자신의 환경적 요구에 부응하여 매일 역동적으로 만들어나가면서 생성되며, 자연체계와 가까이 접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에 속해 존재한다. 또한 어떤 의도에 의해 생성되는 “현대적인” 혹은 “서구의 전형적인 과학” 지식과는 대조적인 성격을 가진다.

전통지식의 기능적 특성(WIPO/GRTKF/IC/1/3)으로는 생태학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의해 생성된 실천적이고 표준적 지식(환경적응적 표준성)이며, 인간중심적, 역동적, 실험적이며 차세대로 전수되며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실험적 전수성), 다양성을 촉진시키며, 지역자원에 가치를 부여하고 자원재생산(다양한 자원활용성)기능을 가진다.

전통지식의 형태적 특성(WIPO/GRTKF/IC/3/8)은 정신적 요소와 실용적 요소가 서로 얽힌 복합적 요소를 가지며(요소 복합성), 문화적 표현과 기술적 측면에서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고(장르 다양성), 전체적 체계적 특성과악은 문화적 배경의 이해가 필요하며 비형식적(비형식성) 특성을 가지고 있다.

#### 다. 전통지식의 개념과 범주

전통지식 자원의 보호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개념 정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개념 정의가 보호의 대상 및 범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국제적으로 아직 통일된 개념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개도국은 개념 정의의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유는 개념정의는 모든 전통지식을 포괄하기 힘든 특성이 있어 한정된 범주에 들지 않는 전통지식 자원의 보호에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정부간위원회(WIPO/IGC) 제1차 회의(2001. 4월)에서 전통지식 개념 정의를 작업과제 B1으로 선정하고 논의를 시작하였다. 여기서 논의된 개념을 요약하면 “전통지식”은 전통을 토대로 한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작품; 공연; 기술; 과학적 발견; 디자인; 마크, 명칭, 심볼; 비공개 정보와 그리고 산업적,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분야에서 지적 활동의 결과로 생성되는 전통을 기반으로 한 기술과 창조물을 말한다. “전통을 토대로” 한다는 것은 지식체계, 창조물, 기술 그리고 문화적 표현물을 말한다. 이것은 대대로 전승되어 온 것이며,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람들 혹은 특정 지역에 관계되는 것이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지식의 범주들은 농업지식; 과학지식; 기술지식; 생태학적 지식; 의약과 치료에 관련한 의료지식;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지식; 음악, 춤, 노래, 수공예, 디자인, 이야기, 예술작품의 형태로서의 “민간전승표현물”; 명칭, 지리적 표시, 심볼과 같은 언어 요소들; 그리고 동산(動産)의 문화유산들을 포함한다.

위와 같은 논의가 계속되었지만 결국 회원국 전체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전통지식 개념 정의 논의는 차후로 미뤄져 있는 상태이다.

국내에서의 전통지식의 개념은 학문적으로 연구되거나 공식적 입장에서 정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단체들은 부여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용적으로 개념을 정의하여 사용해오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WIPO 정부간위원회 및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전통지식의 개념을 “전통적으로 계승되어온 모든 지식을 총망라하는 것으로 전통의약, 전통식품, 농업 및 환경 등에 관한 지식 뿐 만 아니라 전통미술, 전통음악 등 전통예술에 관한 지식 및 민간전승물을 포함한다”고 정의 하였다. 농업과학기술원(2003)은 WIPO 논의와 우리나라 특성에 부합되는 전통지식의 개념을 「전통지식은 특정한 사람 혹은 지역사

회를 배경으로 형성되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여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대대로 전승되어 오는, 즉, 전통을 토대로 산업적, 과학적, 생태적, 문학적, 예술적 분야에서 지식활동의 결과로 생성된 기술 또는 창조물에 내재하는 지식체계」라고 정의하였다.

#### 라. 전통지식, 유전자원, 민속표현물의 관계

위에서 언급한 전통지식의 광의의 개념에는 전통적 지식체계와 형태적으로 유형체인 유전자원(Genetic Resource), 그리고 유·무형체가 포함되는 민속표현물/민간전승표현물(Expressions of Folklore)을 포함한다. 유전자원은 오랜 세월 유전자원에 축적된 유전적 기능에 포함되어 있는 지식을 의미하며, 민속표현물은 표현물 자체에 보유하고 있는 지식체계를 의미한다. 즉, 유전자원과 민속표현물은 그 속에 전통적 지식체계를 포함하고 있는 유·무형체로서 전통지식의 소집합으로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WIPO는 전통지식 중 국제지식재산권 요소가 많은 유형체인 유전자원과 유·무형체인 민속표현물을 지재권에 포함시켜 때로는 통합적으로 때로는 개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유전자원과 민속표현물 이외에도 전통지식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는 향토자원과 같은 대상물이라면 전통지식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 지식체계를 함유하고 있는 유·무형체 자체도 편의상 광의의 전통지식이라 한다. 이들 전통지식은 서로 겹쳐있거나 단독으로 지식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한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십전대보탕에 사용되는 약초는 유전자원이고 약초의 종류, 첨가비율, 약효 등 제법은 전통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보1호인 승례문은 우리의 역사적 창조물로서 전통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 승례문의 전통지식 요소는 승례문 자체가 아니라 그 창조물에 내재해있는 고유한 건축 기법과 단청의 비법 등의 지식체계를 의미하지만 편의상 승례문을 전통지식의 대상물(전통지식 자원)로 칭한다.



그림 1. 전통지식과 유전자원 및 민속표현물의 영역

### 3. 전통지식(자원)과 향토자원

전통지식에 대한 국제논의와 향토자원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고조와 더불어 이들의 개념적 구분에 대하여 혼동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향토자원은 전통지식과 마찬가지로 지역성과 전통성을 정성적 기본요소로 하고 있지만, 이들의 개념 정의에서는 동일 선상의 범주에 놓을 수 없다. 전통지식은 무형의 지식적 체계를 말한다. 전통지식이 존재하는 곳은 유·무형의 창조물과 생태적 진화 과정에 내재해 있지만, 향토자원은 산업적 자원, 역사 문화 자원, 생태 자연 자원 등 유·무형의 자원 자체를 일컫는다. 그러나 전통적 지식체계를 내포하고 있는 형상물을 자원의 개념에서 본다면 두 가지를 동일 선상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향토자원은 전통적 유래와 지역적 제한성을 갖추면 어떠한 자원이던 향토자원이라 할 수 있으나, 전통지식(자원)은 인류의 지식체계에 의한 창조물이 아닌 경우 이를 제외한다. 즉, 산업, 과학, 문학 혹은 예술 분야에서의 지적 활동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아이템들은 대상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인류의 잔재물, 보편화된 언어들, 넓은 의미에서의 유산들이다. 표1의 향토자원의 한 가지 분류의 예에서 전통지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거처, 생가, 문화예술인사, 갯벌, 해양, 동식물, 원시자원, 경관 등의 것들이라 볼 수 있다. 때문에 향토자원은 그 대상물에 있어서 전통지식의 대상물(전통지식 자원)보다 더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 향토자원의 유형

자원의 내용	세부유형	예 시
산업적 자원	공예자원 향토주 향토식품 전통발효식품 민속음료 장인, 명장	보석, 목기, 칠기, 화문석, 유기, 도자기 등 홍주, 소곡주, 문배주, 법주 등 간고등어, 굴비, 고추장 등 김치, 된장 등 식혜, 수정과, 차 등 칠기, 유기 등
역사·문화자원	문화유적 거처, 생가 판소리, 영화, 연극 문화예술인사	사찰, 유적지, 고인돌, 하회마을 등 허은, 추사, 이효석, 논개, 홍길동 등 별신궁, 영화제, 연극제, 영상물 촬영지 등 박경리, 이육사, 이은상 등
생태·자연자원	갯벌, 해양 동식물 원시자원 경관	머드, 갯벌 등 반딧불이, 나비, 꽃 등 황토, 계단식 논 등 산, 바다, 기타 장관(spectacles)

※ 지역발전을 위한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방안(2004. 한국지방행연구원 보고서)

반대로 전통지식 자원의 범주에 속하지만 향토자원에 속할 수 없는 대상은 전통적 지식체계가 창조물로 형상화되지 않은 것과 소리, 행위, 문자, 심볼 등으로 표출될 수 없는 것들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대상물은 다음 그림 2의 A와 B에 속하는 것들로서 많지는 않으나 전통지식의 정의에서 언급한 것들 중 “비공개 정보”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라 생각된다. 즉, 전통지식 자원과 향토자원의 범주는 A와 B를 제외하면 대부분 겹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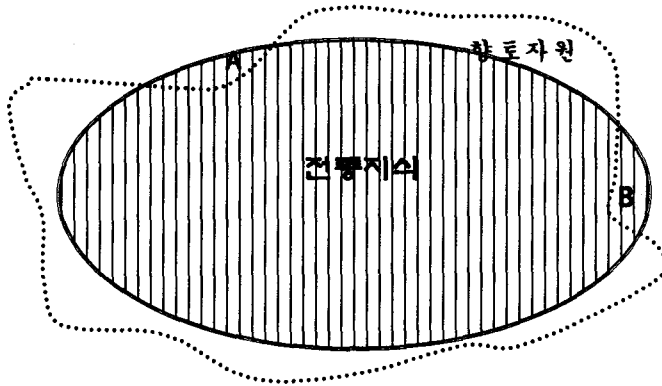


그림 2. 전통지식 자원과 향토자원의 영역

#### 4. 전통지식 보호방법에 대한 국제논의

##### 가. 국제논의 체계

전통지식의 보호와 지식재산권에 관한 논의는 몇 개의 국제기구에서 상호 협력 체제를 유지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국이 구성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Conference of Parties)는 생물다양성협약과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 보호·이용 추진의 실질적 주체이며 최고 의결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당사국총회는 1994년 11월부터 매2년마다 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통지식에 관하여는 1996년 제3차 총회부터 논의를 시작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1998년 제4차 CBD/COP 회의에서 전통지식의 지식재산권화는 유엔 산하 기구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연계 추진 할 것을 결정하였다. 국제지재권의 정보기술서비스, 국제등록시스템, 지재권 제도 통일화 사업 등 세계지식재산권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WIPO는 정부간위원회(IGC)를 구성하고, 2001. 4월 제



1차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물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부간위원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와 지재권에 관해 논의를 시작하였다.

WIPO는 그 밖에 특허법상설위원회(SCP), 정보기술상설위원회(SCIT) 등 각종 상설 위원회와 국제특허분류 개정 등에 관한 작업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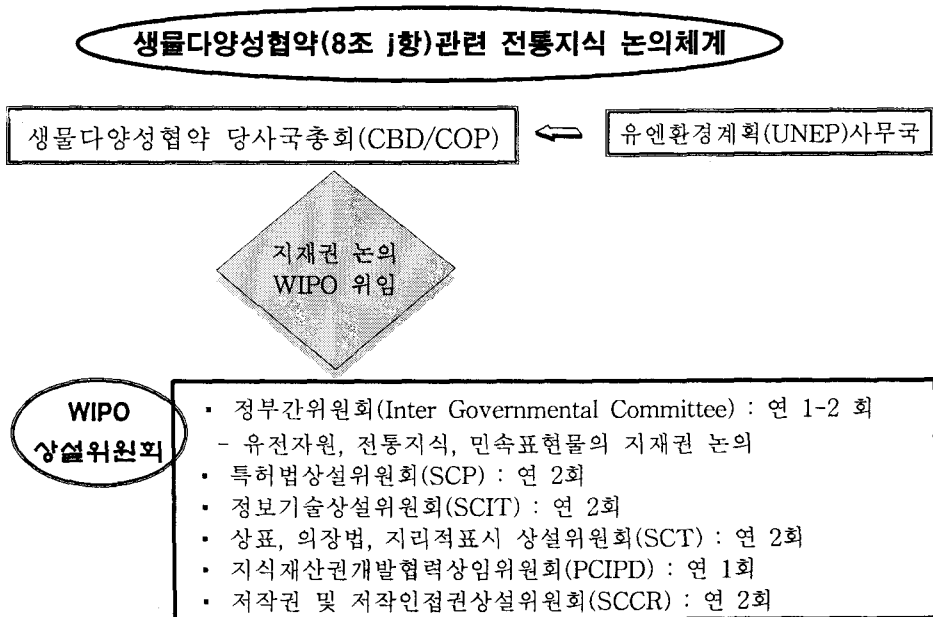


그림 3. 생물다양성협약(8조 j항)관련 전통지식 논의체계

전통지식 선형기술을 위한 DB와 정보교환 체계 설립 관한 국제지재권 협상의 실질적 이행의 국내 업무담당은 각 분야의 전문기관에서 대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통한의학의 보호 및 DB 구축을 한국한의학연구소를 주축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는 유·무형 문화재 및 민속 관련 DB 구축을 담당한다. 농림부는 농촌진흥청이 주축이 되어 농업·농촌 소재 전통지식의 발굴 및 DB를 구축하고 이들의 활용과 지재권 확보에 대응하고 있다.

#### 나. 국제적 보호 방법

WIPO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체계 논의는 세 가지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첫째는 현재 국제특허협력조약(PCT)을 기준으로 하여 방어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방법을 전통지식 관련 조항을 보완 또는 개정하여 보호하자는 선진국들의 주장으로 논의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의 방어적 보호체계하의 논의에서도 개도국들은 사전 동의, 출처공개 등 지금보다 강력한 보호규범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선진국들과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새로운 독자적 방법(*sui generis system*)으로서 각국이 특정 전통지식 자원을 대상으로 국제차원(International dimension)의 국내법을 제정해서 보호하자는 주장과 현재의 국제특허 제도는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고 있는 전통지식을 보호하기에는 불충분함으로 새로운 국제지재권 제도를 신설하자는 개도국들의 주장으로 나누워 진다. WIPO에서 논의는 첫째와 두 번째 방법이 논의되고 있으며, 개도국들이 주장하고 있는 세 번째 방법의 논의는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선진국들의 주장으로 논의 되지 않고 있다.

표 2. 전통지식의 국제보호 방법 논의

보호 방법		법적 형태	논의 내용	주장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국제지재권 보호 체계</li> </ul>		방어적 보호 (배타적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특허분류(IPC), 특허협력조약(PCT)에 전통지식 관련 사항 추가 및 개정</li> <li>• 전통지식 관련 선행기술(DB, PCT MD) 검증 시스템 확립, Toolkit</li> <li>• 지재권 등록/출원 방법 및 서류양식 통일</li> <li>※ 출처공개, 사전동의를 강력한 국제규범 제정 주장(개도국)</li> </ul>	선진국 논의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sui generis system</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차원 국내법</li> </ul>	적극적 보호 (법적조치, 계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법 우선 원칙(CBD 8j) : 논의 진행</li> <li>• 현 개별국 국내법(10여개)은 법적요건이 다양하며 국제차원의 통일성 미흡</li> <li>• 법의 핵심원칙, 법적요소, 정책목적 및 선택 등</li> </ul>	선·개도국 논의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보호체계</li> </ul>	적극적 보호 (법적조치, 계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지식 관련 새로운 보호체계 신설</li> <li>• 개도국은 계속 주장, 선진국 반대로 구체적 논의 없음</li> </ul>	개도국 논의 없음

## 1) 현 국제지재권 제도(PCT체제)의 전통지식 보호

### 가) 국제특허분류(IPC)의 전통지식 관련 개정작업

전통지식과 관련하여 WIPO의 국제특허분류(IPC) 개정작업은 주로 유전자원에 근거하는 식물 의약 발명을 추가하는 개정작업에 국한되어 있다. 식물의약 발명은 현행 A61(위생학, 의학)의 Class, K(의약품, 치과용, 화장용 제제)의 Subclass, 35/78(식물로 부터의 물질)의 Group/Subgroup에 속해 있다. 개정안은 A61K에서 36(medical plant preparation) group을 신설하는 데에 의견접근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른 분야의 전통지식을 현행 IPC에 포함하는 것은 전통지식의 개념 정의와 신규성과 진보성과 관련된 논의가 부진하여 실효성 있는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

### 나) 선행기술 검색 시스템 확립

현재의 국제특허협력조약(PCT)을 기준으로 하는 방어적 보호에서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은 특허나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제에서 전통지식 특허문헌의 지적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여부를 검증하는 문제와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journal, magazine, newsletter, gazette 등이 포함되는 비특허문헌의 원천기술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한 검증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이용되고 있으나, 전통지식은 지금까지 지재권획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술의 원천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에 관한 새로운 정보 검색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음은 WIPO에서 논의되고 있는 구체적 논의 내용을 소개한다.

#### (1) 비특허문헌의 선행기술 목록 작성

WIPO는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지식에 관한 비특허문헌의 현황을 파악하고 장차 WIPO에 연결하여 전통지식의 소유권을 검색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전통지식 관련 문헌데이터를 가진 기존 온라인 DB 목록을 회원국들로부터 수집하였다. 이들은 공개된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의 목록이며 전통지식의 내용은 아니다. 제출양식은 DB명, 내용 요약, 접촉창구, 언어 등 DB의 개략적 내용과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양식이었다.

표 3. 비특허문헌의 선행기술 목록 작성 요청 양식

A	Database title.
B	Internet address.
C	Summary of content of database.
D	Name & contact details of compiler(s) and/or publisher(s) of database.
E	Approximate size of database: i.e., number of entries.
F	Language(s) of database.
G	Other.

세계 각국이 제출한 건수는 100여개의 DB 목록을 제출하였으며 한국은 제출된 것이 없었다.

## (2) 비특허문헌의 선행기술 DB 작성 및 전자도서관 설립

WIPO의 B3-4 작업과제인 전통지식의 국제DB 및 전자도서관 설립에 관한 기술적 고려사항은 분류, 검색도구, 명명법 사진 등 사용자들의 요구 사항과 운영 접근 및 사용 비용, 내용과 정책적 사항에 대한 보호, 능력배양과 기술적 보조와 같은 제공자들의 요구 사항, TK database의 표준과 같은 시스템적인 요구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들의 표본으로서 WIPO portal에 링크된 회원국의 온라인 Database의 사례를 소개하고 각국이 이를 참고하여 DB 및 전자도서관을 구축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중국의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CM) Patent Database는 중국전통의약 특허문헌 12,124종(32,603 TCM formulas 포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도의 Health Heritage Database는 식물을 기본으로 하는 CD ROM의 형태로서 B.C. 12세기 고대 Sanskrit 성전에 공개된 내용을 코드화하여 50개의 토착의료 식물의 비특허 및 특허문헌과 의료식물의 토착명을 22개 남아시아 언어를 사용하여 제공하고 있다. 전자도서관을 구축하고 있는 인도의 Ayurveda 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TKDL)는 물질구조 위주의 접근체계로서 TKRC와 IPC의 분류도구를 사용하여 국제적 검색이 가능하며, 정보접근 가능 언어는 English, French, German, Spanish, Japanese로 되어서 국제적 활용에 용이하다. Venezuela의 Biozulia database는 원주민 의료, 선조의 기술 및 전통지식(식품 및 농업), 채취 샘플의 GIS 정보를 수록하고 있고, 사진 video와 소유자 정보도 수록하고 있으며, 소멸과 변형의 위험에서 DB 기록의 유지, 추가 정보 수록이 가능한 software를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3) 특허협력조약 최소문헌(PCT Minimum Documentation) 등록

WIPO의 B3-1 작업과제인 TK와 관련된 정기간행물을 특허협력조약(PCT) 최소문헌(MD)로 포함하는 목적은 PCT 국제특허출원 건에 대하여 접수, 검색, 검증 작업 수행에 최소 경비와 최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WIPO에서 최소한으로 검색하는 문서목록을 작성하는데 있다(운영 근거 PCT Article 15-4).

### ○ 기존의 등록된 최소문헌

PCT MD에 포함된 특허문서들은 첫째, 관련조항 paragraph (c)에 명시된 기존의 특허협력협약 상의 최소문헌으로서 1920년 이후 서구열강 특허문서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포함된 문서는 ① 1920년 이후 발간된 불어, 독어로 된 특허문서와 프랑스, (구)독일, 일본, (구)소련, 스위스, 영국, 미국 등의 특허출원서 ② 구소련의 발명증서, 프랑스의 출간된 출원증서 및 이용허가증서, ③ 크래임이 걸리지 않은 영어, 불어, 스페인어, 독

어로 된 1920이후 기타 나라에서 출간된 특허 또는 출원서로 되어 있다. 둘째, 특허와 발명자 증서용으로 발간된 국제 및 지역 출원서, 국제 검색처에서 동의한 발간된 비특허 문서로 되어 있다. 비특허문서는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journal, magazine, newsletter, gazette 등을 포함한다.

**○ 발간된 비특허 문서의 PCT MD 추가작업 시행**

WIPO는 1998-1999에 전통지식 국제특허출원 시 선행기술로 활용하기위한 전통지식 관련 정기간행물 목록 제출을 WIPO에서 회원국들에게 요청하였다. 세계 각 회원국들은 자국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300 여개의 정기간행물 문헌목록을 제출하였고, 한국은 대한본초학회지, 한국생약학회지 2건을 제출하였다.

**표 4. WIPO에 제출된 한국의 비특허 최소문헌 목록**

K
<p><b>A. The Korean Journal of Herbology.</b>  <b>B.</b> The Korea Association of Herb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344-2, Sinyong-dong, Iksan, Jeonbuk, 570-180, Republic of Korea. Tel: 82-63-850-6844.  <b>C.</b> Research papers on the oriental medicines, including origin, components, activities and clinical studies of herbal medicines.  <b>D.</b> ISSN: 1229 1765.  <b>E.</b> Paper.  <b>F.</b> <a href="http://www.herbology.or.kr">http://www.herbology.or.kr</a> (The Korea Association of Herbology).  <b>G.</b> Korean.  <b>H.</b> Biannual.</p>

<p><b>A. The Korean Journal of Pharmacognosy.</b>  <b>B.</b> The Korean Society of Pharmacognosy, College of Pharmac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20, Kung-dong, Yuseung-ku, Daejeon, 305-764, Republic of Korea. Tel: 82 42 821 5925  <b>C.</b> Research papers on pharmacognosy and related scientific areas including the origin, components and pharmacological activities of herbal medicines.  <b>D.</b> ISSN: 0253 3073.  <b>E.</b> Paper.  <b>F.</b> <a href="http://www.ksp.seoul.kr">http://www.ksp.seoul.kr</a> (The Korean Society of Pharmacognosy)  <b>G.</b> Korean.  <b>H.</b> Quarterly.</p>
---

**다) 전통지식 DB와 지재권 등록서류 양식(아시아그룹 기술적 제안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안 제국들은 TK DB와 등록을 위한 자료 표준 필요성과 Data에 포함할 내용의 개발과 추천을 하기위해, 전통의약, 전통농업 등 다른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간적 DB 작성 양식을 제공하고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제안서 내용은 DB와 등록양식의 data field 설정과 정의에 있어서 내용과 자료정리의 표준, DB format과 지재권등록 자료 보관방법 등 기술적 표준, DB 접근 및 DB와 등록업무에서 안전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 등 보안과 정보교환 표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국제차원의 국내법 요소 논의**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 j항에는 전통지식의 보전 활용을 위해 국내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별국이 운용하는 독자적 국내법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국의 처지에 따라 다양한 법체계를 도입하고 규제 대상이나 방법도 각양 각색이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체계가 확립되고 이에 따라 국제 지재권 행사가 본격화되면 행적적 혼란과 상호 마찰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WIPO는 독자법체계에서 각국이 준수해야할 정책적 목적과 원리, 법적요소 등에 관하여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는 논의를 시작하였다.

**가) 전통지식 보호의 정책적 목적**

각국이 독자적 입법을 함에 있어 각 개별국의 여건과 국제규범에 부합될 수 있는 정책목적을 분명히 함으로서 전통지식 보호와 일관성 있는 국제지재권 확립을 도모하고자 한다.

정책 목적(POLICY OBJECTIVES)

(1) 가치의 인식	(9) 관련 국제협약 또는 처리과정과의 일치성
(2) 존경심 고취	(10) 기술의 혁신과 창조성의 촉진
(3) 전통지식 보유자의 실질적 요구 충족	(11) 사전고지 동의와 상호 동의조건에 기초한 교환의 보장
(4) 전통지식의 보전과 유지 증진	(12)공평한 이익 공유 증진
(5) 전통지식 보유자의 영향력 강화 및 전통지식 시스템의 특수 성격 인정	(13) 공동체 발전과 합법적인 무역활동 촉진
(6) 전통지식 시스템의 후원	(14) 무자격 집단에 대한 부적절한 지재권 부여 배제
(7) 전통지식 안전에 대한 기여	(15) 투명성과 상호신뢰 향상
(8) 불공정 차별적 이용의 억제	(16) 전통문화표현물의 보완적 보호

그 목적으로는 전통지식의 사회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정책 목적을 두어야 하며, 전통지식 보유자의 실질적 요구 충족, 전통지식의 보전과 유지 증진, 불공정 차별적 이용의 억제, 사전고지 동의와 상호 동의조건에 기초한 교환의 보장, 공평한 이익 공유 증진, 무자격 집단에 대한 부적절한 지재권 부여 배제 등 16개 항의 정책 목적을 논의하고 있다.

**나) 전통지식 보호의 핵심원칙 CORE PRINCIPLES**

전통지식 보호의 지침적 일반원칙은 토착 및 지역사회의 지식, 혁신적 기술 및 관습을 존중하고 이를 보전할 것을 장려한 생물다양성협약의 기본적 정신에 부합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전통지식 보유자의 요청과 기대에 대한 부응, 권리의 인식, 공평성과 이익공유, 관련 유전자원에 접근을 통제하는 현존 법적 시스템에 대한 일관성 유지와 전통지식의 특수성 인정 등 10개 항의 원칙을 논의하고 있다.

일반원칙 GENERAL GUIDING PRINCIPLES

(a) 전통지식 보유자의 요청과 기대에 대한 부응
(b) 권리의 인식
(c) 보호의 효율성과 접근성
(d) 유연성과 포괄성
(e) 공평성과 이익공유
(f) 현존 법적 시스템에 대한 일관성
(g) 타 국제적/지역적 수단이나 처리과정과의 협력과 존경
(h) 전통지식의 관습적 이용과 전용에 대한 존경
(i) 전통지식의 특수성 인정
(j) 전통지식 보유자의 요청에 부응하는 협조 제공

**다)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정책적 선택**

국가정책은 국가별 여건과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며 전통지식 보호도 국가적 상황에 따라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다. 정책적 선택 요소로서는 지식재산 입법, 접근과 이익공유 구조, 토착권, 불공정 경쟁 억제 등의 법적 정책적 구조와 접근규정, 배타적 권리, 불공정 경쟁 억제, 관습법 등의 활용상의 정책도구, 전통지식 관련성, 전통지식의 지역성, 전통지식의 소속 등을 규정하는 대상물의 범위, 적극적 보호, 방어적 보호, 접근규정 등을 규정하는 보호의 형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독자적시스템(*sui generis system*)에 의한 전통지식 보호법 사례(표 5)는 생물다양성과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이익공유를 규정하고 있는 브라질의 “전통지식접근과 유전자

원 접근규제” 법, 전통의약의 기술과 구조를 보호하는 중국의 “중국전통 의학·종 보호 규제에 관한 특허법”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제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국의 독특한 전통지식을 대상으로 독자적 입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표 5. 독자적 국내법(*sui generis* measures and laws) 사례

국가	법령명	제정 년도
African Union	지역사회, 농부, 품종개량가의 권리보호와 생물자원 접근 규칙에 대한 아프리카 모델 입법	2000
Brazil	유전유산 접근 규칙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보호에 관한 임시 기준법	2001
China	중국전통의약 보호규정 및 특허법	2000
Costa Rica	생물다양성법	1998
India	생물다양성법	2002
Peru	생물자원 유래 토착민의 집단지식 보호제도법	2002
Philippines	토착민 권리법	1997
Portugal	식물내생 물질의 등록, 보전, 법적관리, 전파의 법적제도 확립법	2002
Thailand	전통 Thailand 의약정보 보호 및 진흥법	
U.S.A	인디안 예술, 기능법 및 관련규정	1990

표 5의 독자적 국내법(*sui generis* measures and laws) 사례들의 정책적 선택사항을 분석하면(표 6), 이들 법률의 규제대상과 규제방법 등에는 국가간 차이가 많아 차후 국제적으로 자국의 전통지식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독자적 입법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없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국제적 적용에는 국가간 마찰의 소지를 안고 있다. 법적 선택사항을 보면 법적 정책적 구조의 접근과 이익공유 구조는 아프리카 모델법과 브라질, 인도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활용정책도구에서는 배타적 권리를 인도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채택하고 있다. 대상물의 범위는 생물자원, 유전자원, 전통농업, 전통의약, 토착/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책적 목적은 혁신 촉진, 정당하고 공평한 이익공유, 지속적 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보호의 형태는 적극적 보호를 기본으로 하여 방어적 보호와 접근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각국이 운용하고 있는 독자법들의 정책적 선택들은 국가별 여건에 따라 선택하고 있는 사항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독자적 입법에 의한 전통지식의 보호는 국제차원의 기준이 마련되어야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각국의 독자법(*sui generis measures & laws*)의 정책적 선택 분석

정책적 선택		African Model Law	Brazil	China	India	USA
법적 정책적 구조	지식재산권 입법			v		v
	접근과 이익공유 구조	v	v		v	
	토착권					
	불공정경쟁 억제					v
활용 정책 도구	접근규정	v	v		v	
	배타적 권리	v	v	v		v
	불공정경쟁 억제					v
	관습법	v				
대상물의 범위	전통지식 관련성	생물자원	유전유산		생물자원	
	전통지식의 지역성	전통농업		전통의약		
	전통지식의 소속	토착/지역사회	토착/지역사회		지역민	인디안 부족
정책적 목적	전통지식/타 요소 보전	v	v +유전유산		v +생물자원	v 문화유산
	혁신 촉진			v		v
	정당하고 공평한 이익공유	v 생물자원	v 유전유산		v 생물자원	
	지속적 발전	v				v
보호의 형태	적극적 보호	v	v	v	v	v
	방어적 보호	v	v		v	v
	접근규정	v	v		v	
관련 대상물의 명백한 규정		v	v	v	v	
관습적 이용의 예외와 제한		관습적 이용	관습적 이용		관습적 이용	

## 5.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제도 활용

### 가. 세계 각국의 지재권제도 운영현황

현 국제지재권 제도(PCT 체제)의 보호와 각국의 지재권법은 방어적 보호를 근간으로 하며 관련 지재권의 종류는 각국이 대동소이하다. 관련되는 지재권의 종류는 지리적 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s*),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copyright*), 의장권(*designs*), 식물종 보호, 상품 비밀법, 인증마크(*certification marks*), 공동상표권(*collective trademark*), 비밀거래보호법(*trade secret law*) 등으로 전통지식의 특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권

리의 종류는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 권리를 적용하는 것은 전통지식의 특성 때문에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 전통지식은 신기성(novelty)과 독창성(originality)에 부합하지 않고, 누가 개인적인 생산자인지에 대해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또한 재산권의 보호를 얼마동안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전통지식을 양화하기 곤란하며, 전통지식의 무형식적인 성질과 소유자의 과학적 지식 부족은 지재권 행사에 원천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전통지식의 기존 지재권에 의한 보호의 한계성에 대한 회원국의 설문조사에 의하면(표 7) 신기성과 독창성 이외에도 발명 단계의 불명확성, 고형화의 부족, 소유권의 혼란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표 7. 전통지식 보호에 기존 지재권 관련법 적용의 한계점 인식

문제점	국 가	국가수	비율(%)
신기성/ 독창성	아르헨티나, 캐나다, 쿠바, 프랑스, 독일, 한국 등	30	49.2
발명단계/ 비명확성	아르헨티나, 쿠바, 체첸, 독일, 이탈리아, 케냐, 등	19	31.1
고형화	케냐, 멕시코, 필리핀, 러시아, 우루과이 등	8	13.1
무형식성	아르헨티나, 캐나다, 쿠바, 프랑스, 케냐, 말라위, 등	20	32.8
개인/집합	아르헨티나, 호주, 부탄, 쿠바, 독일, 헝가리, 등	22	36.1
보호연한	쿠바, 체첸, 독일, 멕시코, 몰도바, 뉴질랜드, 등	14	23.0

기존 지식재산권에 의한 전통지식의 국가별 보호 현황(표 9)은 지리적표시와 상표에 의한 보호가 가장 많고 다음이 특허권이였다.

표 8. 기존의 전통지식 지식재산권 보호방법별 국가 현황

구 분	국 가 수	%
지리적 표시	13	23.2
상표권	12	21.4
특허권	11	19.6
저작권	9	16.1
의장권	7	11.5
식물종 보호	2	3.6
상품 비밀법	2	3.6
총계	56(25개국)	100.0

## 나. 우리나라의 전통지식 보호의 법적제도 현황

### 1) 방어적 보호의 지재권 제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제도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으로 구성되는 전통적 지식재산권과 지리적표시, 부정경쟁방지 제도가 포함되는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채택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제도는 국제특허분류(IPC)와 특허협력조약(PCT)을 기반으로 하는 WIPO의 방어적 보호제도와 동일하다.

전통지식은 신기성과 독창성의 결여, 발명단계의 불명확성, 고형화와 형식성의 결여, 소유자의 불분명(개인과 집합), 보호연한의 문제 등으로 지식재산권의 적용은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그러나 WIPO에서는 지재권의 종류나 전통지식자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지재권 제도의 개정을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논의 추이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재권 제도의 중심이 되는 특허권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동일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신기성과 독창성의 결여, 발명단계의 불명확성, 고형화와 형식성의 결여 등 전통지식의 특허요건 불충족으로 실제 특허취득이 제한되어 있다. 단 지역사회 또는 토착사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재배되어 특정 유전자자가 집적된 유전자원로부터 새로운 품종을 육성한 경우와 특정 식물로부터 분리된 신물질 등은 특허 취득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술의 소유자가 품종 육성이나 신물질 분리자가 아니고 유전적 특성을 길러내고 특정식물을 오래도록 재배해 온 농부들 또는 토착사회가 된다. 인도에서 천연약재로 널리 사용되는 Neem나무의 물질 분리의 경우와 Mali 야생버의 비교조병 내성 유전자 도용은 그 후 특허취소와 이익공유의 형태로 전통지식의 소유권을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이다.

상표권은 식별력을 지재권 요건으로 하며 불등록 사유로서 보통명칭, 관용상표, 성질표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 전통지식자원의 특성상 이러한 불등록 사유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표명 결정이 용이하지 않다. 전통지식자원 산물의 상표 취득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전통성 및 소유권 검증절차가 없이 선 등록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전통지식 보호의 기본적 목적에 활용하기는 부족하다.

의장권에 의한 보호는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지재권 요건으로 하며 전통지식자원 중 문화적 형성물 등에 적용할 수 있고, 저작권에 의한 전통지식 보호는 민속적 문화자원인 회화, 서예, 조각, 공예, 민요에 적용할 수 있겠으나, 의장권자와 저작권자는 개인이 되는 경우는 드물고 국가나 자원이 귀속된 단체가 될 것이다.

신지식재산권으로서 근래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리적표시 제도는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방에서 생산된 상품임을 가리키는 표시(TRIPs)이다. 이 제도는 수요자 및 생산자 양자를 보호하

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식재산권으로 격상되었으며, 전통지식과 관련하여 개인과 단체 간의 소유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지재권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리적 표시 제도는 1996년 한·EU 기본협력체결에서 TRIPs 협정상 지리적 표시 의무이행을 명문화(제22조 2항)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국내의 지재권으로서 지리적 표시제는 상표법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도 이외에 개별적 국내법의 형태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상의 지리적표시 등록제도가 있다.

상표법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상표법 2005.7.1시행)는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2)”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제조자, 생산자 혹은 거래자의 협회 또는 조합 등 단체의 구성원에게만 사용이 허용되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상표의 명칭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의 신설은 지금까지 상표법상 전통지식자원의 상표등록에 대해 식별력 상실로 인한 불등록 사유, 즉, “그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포장만으로 된 상표(제6조 1항3호)와 국가명, 고적지, 변화가 등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제6조1항4호)”로 인한 전통지식자원의 상표 사용 제약을 해결하였다.

표 9. 지재권 종류별 적용 가능 전통지식 자원

지재권	지재권 요건	적용 가능 전통지식	지재권 주체
특허권	· 산업성, 신규성, 진보성, 동일성	· 유전자원, 생물 신물질	국가, 지역사회
의장권	·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	· 문화적 형상물 ※제주 돌하르방	국가, 귀속단체
상표권	· 식별력	· 보통명칭, 관용상표, 성질표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닌 것	지역사회, 귀속단체
저작권	· 창작성	· 회화, 서예, 조각, 공예, 민요	국가, 귀속단체
지리적표시	· 지리적 특성	· 지역성 있는 농산물	지역사회, 귀속단체

## 2) 독자적 국내법에 의한 보호

### 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표시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1999.7.1)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 보호(품질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지식재산권이지만 지리적 표시만을 규정한 단독법은 아니다. 1997년 농림부는 독자적으로 지리적표시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TRIPs협정의 지리적표시 보호규정은 최소보호기준으로서 현행 국내 관련 제도로서 이행조건 충족이 가능하고 실익이 없다는 특허청의 판단에 따라 철회한 바 있다. 전통지식자원의 지재권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 왔던 소유자와 관련하여 독점사용을 불인정하고 지리적표시와 관련되는 단체, 조합이 아닌 자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등록은 해당지역 생산 가공업자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고, 관계기관이 심사하고, 품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등록한다.

#### 나) 종자산업법에 의한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

종자산업법에 의한 식물 신품종 보호는 개발된 신품종에 대해 육종자의 배타적 권리를 법적으로 특허권과 유사하게 보장해 줌으로서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 보급을 촉진하여 농업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 제도는 WTO 출범시 TRIPs 협정의 단서 조항에 회원국들이 채택하도록 명시해 놓은 사항으로서, 식물 신품종을 특수한 새로운 제도(*sui generis system*), 즉, 개별국의 국내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식물신품종 보호 제도는 식물 품종의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품종의 고유 명칭을 권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산업생산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요건으로 하는 특허의 요건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법에 의한 권리 보유기간은 20년 이상으로 특허보다 길다. 1995년 제정되어 1997년 식물신품종 보호제도가 전면 도입된 이 법은 새로 육성된 식물품종을 각국이 공통의 기본적 원칙에 따라 보호하여 우수한 품종의 개발과 유통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5. 맺 음 말

세계 각국은 전통지식자원을 새로운 경제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WIPO에서 논의하고 있는 선·개도국간 전통지식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은

첫째, 우리나라는 개도국에 비해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지는 않으며, 선진국과 같이 바이오산업 및 천연물 의약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방어적 보호를 주장하는 선진국 입장을 견지하되, 국내 전통지식 현황조사 및 향후 보호방안에 대한 다각적 연구를 수행한다.

둘째, 전통지식, 유전자원 및 민간전승물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제적 규범화 등과 같은 실제적인 논의가 추진될 경우에는 문화부·복지부·농림부·과기부·산자부 등이 공동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전통지식의 국제적 권리 확보를 위한 기술적 대응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기술내역, 소유자, 지역 등 명확한 소유권 근거요소를 기재할 수 있는 국제차원의 기반을 조성하고, 전통지식자원의 발굴, 가치평가, DB 작성에 차질 없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DB에의 접근과 등록업무의 안전적 정보교환을 위한 IT 기술을 포함한 보안과 정보교환 표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전자도서관, 국제특허조약의 최소문헌 등록 등 선행기술에 해당하는 기존 정기간행물 및 DB의 목록화로 WIPO에 자산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넷째, 전통지식자원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방어적 지식재산권제도와 적극적 보호방법인 국내법의 조화와 제도의 통합 정비를 시도해야 한다. 법적제도의 정비 통합은 소유자 및 지역사회 권리 관계, 이익의 배분 및 지속적 활용을 위한 전통지식자원의 관리 시스템이 포함되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전통지식의 지재권 확보에 활용도가 높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두개의 법령으로 운용되고 있는 지리적표시제는 단독법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그 대상 품목도 다양하게 확대됨이 바람직하다. 또한 한의약과 같은 특정 전통지식자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국내법을 제정하여 장차 국제적 지재권 확보와 분쟁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CBD. 2002.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8(j) and related provisions. 7th report.
- WIPO. 2001. Progress Report on the Status of Traditional Knowledge as Prior Art. GRTKF/IC/2/6.
- WIPO. 2002. Traditional Knowledge - Operational Terms and Definitions. GRTKF/IC/3/9.
- WIPO. 2002. Inventory of Existing Online Databases Containing Traditional Knowledge Documentation Data. GRTKF/IC/3/6.
- WIPO. 2003. Descriptions of National and Regional Experiences with Existing *Sui Generis* Measures and Laws for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GRTKF/IC/5/INF/6.
- WIPO. 2003. Report on the Toolkit for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when Documenting Traditional Knowledge and Genetic Resources. GRTKF/IC/5/5
- WIPO. 2004. Recogni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Within the Patent System. GRTKF/IC/7/8.
- WIPO. 2004. Traditional Knowledg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and Genetic Resources: The International Dimension. GRTKF/IC/6/6.
- WIPO. 2004. Traditional Knowledge: Policy and Legal Options. GRTKF/IC/6/4.
- WIPO. 2005.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Revised Objectives and Principles. GRTKF/IC/8/5.
- WIPO. 2005. Update on Technical Standards and Issues Concerning Recorded or Registered Traditional Knowledge. GRTKF/IC/8/7.
- 국가전문행정연수원. 2003. 지식재산권과정 교재. 국제특허연수부
- 김병학. 2003. 지식재산권 국제브랜드 전략. 도서출판 두남
- 신은정. 2002.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 및 전망. 특허청. 지식재산 21. 71:
- 이재철. 2002. 우리나라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효율화에 대한 연구(하). 지식재산 21. 73:
- 특허청. 2002.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 (1998-2001). 서울 특허청
- 한국한의학연구원. 2003. 전통적 임상기술의 보호 및 DB 구축(1). 1-168

## 【토론 1】

# 전통지식자원의 보존과 지재권 활용

박 석 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국제적으로는 물론 국내적으로도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전통지식에 관하여 특성과 개념 및 범주, 유전자원·민속표현물과의 관계 및 향토자원과의 차이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전통지식의 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 내용, 전통지식에 대한 국가별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와 그 한계에 대한 인식, 우리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와 제도 개선에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함.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 전통지식은 유전자원 및 민속표현물과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으로서, WTO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과 유엔 환경개발회의의 '생물다양성협약(CBD)' 및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식량·농업용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서 각각 상이한 내용으로 규정된 바 있음. 특히 WTO/TRIPs의 규정은 전통지식에 대해 국가소유·공동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배타적인 사적 소유만을 인정하며, 접근과 이익 공유(Access and Benefit Sharing: ABS)의 문제도 당사자간의 사적 계약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등 다른 국제협약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논의 내용에 반하고 있음. 따라서 생물다양성협약과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논의 내용 외에 전통지식에 관련되는 모든 국제협약의 내용과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생물다양성협약(CBD)'은 1992년 5월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우리나라도 1994년에 가입하였으며, 1998년 제4차 당사국총회(COP)의 결정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전통지식의 재산권 보호에 관해서도 검토하게 되어 2001년 4월 제1차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물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부간위원회'가 개최된 이래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그런데 이 글에서는 1992년 5월에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후의 경과에 관해 소개하지 않은 채 WIPO의 논의 내용만



을 소개하고 있어 생물다양성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재산권 보호의 방향과 원칙 등을 알 수 없음. 1992년 협약 내용과 이후의 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제시된 전통지식의 재산권 보호 방안 3가지 중에서 현재의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유지한 채 국제특허 분류의 개정 및 선행기술 검색시스템 확립 방안과 국제 차원의 국내법 적용 방안에 관해 설명하였는데, 소항목으로 세분하여 설명함으로써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음.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소항목으로 구분하지 말고 통합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겠음.

○ 전통지식의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국제적인 논의 내용과 각국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의 한계 등과 관련하여 전통지식의 국제특허 및 분쟁 사례 등을 수집하여 제시한다면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임.

○ 세계 각국의 지적권 제도 운영 현황 편에서 기존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과 관련하여 전통지식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는 국가의 이름을 들고, 지식재산권의 권리 유형별 국가 수 등을 제시하였는데, 기존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총괄적인 통계 외에 전통지식의 재산권 보호에 관한 모범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와 그 내용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우리나라의 전통지식 보호의 법적 제도 현황 편에서 제도의 내용만이 아니라 구체적 사례와 문제점 등에 관해서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토론 2】

### 「전통지식자원의 보존과 지재권 활용」 토론문

이 기 만  
한국향토사연구전국연합회 이사

지난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체결된 「생물다양성협약」 이후 현재까지 본격화되고 있는 전통지식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기존의 국제적인 논의의 핵심은 발표자께서도 분명하게 지적했듯이 전통지식자원을 경제적 자원으로 인식하는 방식에 관한 선진국과 개도상국 등의 입장 차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전통지식의 개념과 범주 설정, 전통지식과 향토자원의 차이, 전통지식 보호방법에 관한 그간의 국제적인 논의과정과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제도 활용방안,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취해야할 자세와 방향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야에 대해 문외한인 토론자로서는 발표자의 정리에 많은 시사점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토론자는 발표자께서 정리한 내용적 틀을 기본토대로 하되 우리의 구체적인 (농촌)현실을 돌아보며 발표자에게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자께서는 “우리나라는 전통지식 자원은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빈약하고 바이오산업 등 산업화 기술은 개도국보다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현 국제지재권 제도를 주장하는 선진국 입장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분명히 정리하고 있는데 이는 이른바 전통지식자원을 지나치게 ‘산업적인 관점’에서 개념화·한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전통지식자원은 분명 산업화되고 분명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만 그 같은 관점은 자칫 잘못하면 전통지식자원을 산업화 가능성의 유무만을 가지고 편협하게 규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지식 자원이 아프리카나 남미,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빈약하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도출되는 것입니까? 이 점에 관해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둘째, 보다 직접적으로 우리의 현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발표자의 지적대로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농촌지역에 풍부하게 잠재되어 있는 전통지식자원을 경제적 향토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인식이 점증하고” 있으며 정부도 ‘지역개발특별법’ 등을 제정하며 향토자원의 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농촌현실을 개선하려는 데 얼마나 근원적으로 다가가고 있으며 얼마나 실질적

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농촌은 전통테마마을(농촌진흥청), 녹색농촌테마마을(농림부), 아름마을(행정자치부), 문화역사마을(문화관광부) 등 다양한 형태로 전통지식자원의 보존과 활용이란 측면에서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이같은 지원사업이 제대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실패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전통지식자원에 대해 ‘하면 잘 될 것이다’라는 이상적 낙관주의와 ‘산업적 활용화’라는 현실주의적인 목표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은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통지식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하려는 정부의 정책사업이 별다른 성과 없이 일종의 ‘건수주의’에 머무르고 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농림부, 산자부, 문광부, 행자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각 부처들이 서로 각개약진 식으로 펼쳐온 정책의 연이은 실패는 발표자도 지적하였듯이 보다 통합적인 공동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해주고 있는데, 이같은 작업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효과적인 현실방안에 관해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향토자원이 전통자원보다 더 광범위한 것으로 그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며 향토자원의 유형으로 ‘산업적 자원’ ‘역사·문화적 자원’ ‘생태·자연자원’ 등을 인용하고(200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 있는데, 이같은 유형분류는 지나치게 물질 중심적인 유형분류이며, 이는 최근 들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른바 ‘문화산업’ 같은 유형은 아예 무시하는 잘못된 편의적인 분류방식이라고 봅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